

인천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0145 판결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1,369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별지